

#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88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신복자,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 훈,  
황유정 의원(28명)

## 1.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독가스, 트라우마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시장이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면서 지원 근거와 제외 조건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시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퇴직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건강진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

제4조(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그밖에 특수건강진단의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 1.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퇴직일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 2. 구비서류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본 건강진단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이용범위: 타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지정 기관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인사기록카드 열람 요청 및 동의

본인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자격심사 및 행정처리 목적 상, 인사기록관리자가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1. 본 동의서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진단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2.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 정보 활용기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및 소방관서)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및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검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재정소요 요인 없음] 조례의 목적 및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3조(지원 등) 제4조(신청 및 절차)	△	[기술적 추계 곤란]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실시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주기 및 세부절차 등 필요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제1항의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건강진단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3조제2항에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4항의 특수건강진단의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규정하고 있어 지원 범위,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 다만,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의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sup>1)</sup>에 따르면, 2027년부터 10년간 퇴직소방공무원은 총 1,978명으로 특수건강진단 관련 비용은 첫째 74백만원, 이후 매년 평균 10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참고자료(붙임1)로 제시함

1) 향후 조례개정 등 사업근거가 마련될 경우를 고려한 내부 검토 자료로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예산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2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2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 □ 진행사항

- 업무 특성상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노출 빈도가 높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추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행안위) 계류 중
- 타 시·도 추진현황: 제정(7개 시도), 개정(2개 시도)
  - 검진대상 :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
  - 검진기간 : 퇴직 후 10년
  - 검진주기 : 년 1회
  - 검진항목 : 현직 소방공무원과 동일

구 분	보건안전복지법 일부 개정	개 정 (보건복지조례)	제 정	비 고
대 상	국회(행안위) 계류 중	광주광역시, 세종	경북, 충남, 충북 부산, 제주, 전북 창원	※ 26년 예산 반영 중복

\*평균 사망연령: 소방직 74.7세, 경찰직 78.8세, 일반직 78.3세 / 전체 평균 79.7세(22.10월 기준)

### □ (서울소방) 조례 제정 시 인원 및 예산 추계

- 대 상 : 소방공무원 1,978명(최대) ※ 10년 연평균 198명
- 소요예산 : 74,000천원으로 시작, 매년 평균 102백만원 소요예정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퇴직자(명)	148	241	218	272	272	207	178	171	143	128
누적인원(명)		389	607	879	1,151	1,358	1,536	1,707	1,850	1,978
누적예산(천원)	74,000	194,500	303,500	439,500	575,500	679,000	768,000	853,500	925,000	989,000

### □ 향후계획 : 조례 제정 및 국회 법령 개정 동향 모니터링